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3월 3 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현재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시 구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을 두고 있어, 타 시·군·구에서 전입 온 대상자의 경우 일정 기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. 이에, 지급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9조의 4(보훈예우수당 지급) 2호(광진구 3개월 이상 거주) 수정
  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나. 별지1호 서식 일부개정 및 3호 서식 삭제(별지1호서식으로 통합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0년 3월 24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: 복지정책과장, 전화: 450-7483, FAX: 3425-1769, E-mail: chivalry853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[전문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이념)**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,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 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 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"국가유공자"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.
4. "국가보훈관계 법령"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5. "국가보훈단체"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  - 나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- 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**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** 광진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**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.

1.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,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와 소개 등 의전상의 우선 예우 실시
3.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5.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행사시 위문
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·재정적 지원
7.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
8.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·공헌자의 업적 선양

**제7조(복지 및 선양시설의 지원)**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한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훈회관 등 복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.
2.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3. 공항·항만·도로·공원·광장·철도역·지하철역 등과 건축물·조형물·사적지 등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8조(단체 예산지원)**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.

1.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, 운영, 유지비의 지원

2.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의 예산지원
3.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
4. 삭제<2016.12.27.>

**제9조(생업 및 복지의 지원 등)**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생업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광진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, 구두수선대,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 및 위탁
2. 광진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원·체육 및 문화·복지 시설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시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.
3.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광진구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.
4. 경로자 지원시 국가보훈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5. 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** ①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(서울특별시 조례 포함)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하며, 지급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.
- ③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4항에 따른 유족이 별지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사망위로금 신청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

**제9조의3(위문금 지급)** ① 구청장은 설, 추석, 국가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위문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, 지급액은 연10만원 이내로 한다.

③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의4(보훈예우수당 지급)**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.

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되, 위문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④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.

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**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30.>

**제11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**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**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**부칙 <조례 제731호, 2011.09.09>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·제8조 및 제9조의2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**부칙 <조례 제880호, 2015.10.30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